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손자용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조문개정

- 남부출장소 신설 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
### 별표개정

- 권한위임 사무 신설 : 1건 <별표 4>
  -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권(총무과)
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: 2건 <별표 1>
  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변경(관광항공과) : 시도 → 시군 (사무이양)
  - 삭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(균형개발과)
    - 삭도 :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됨
    - ※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
  
-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등 변경 : 5건 <별표1>
  - 근거법령 개정 : 4건
    -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, 과태료 부과 징수 (2건)
      - ※ 농산물품질관리법 →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
    -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및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(2건)
      - ※ 자동차저당법(폐지), 건설기계저당법(폐지) →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
  - 부서명칭 변경 : 1건
    - 사회복지정책과 → 복지정책과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남부출장소를 신설하고,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신설하며,
-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하고,
-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

금번 조례안은 남부출장소 신설에 따른 신규위임 사무 반영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